

“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.”

지금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!!



새로운 교육급여제도는?

- 1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.
중위소득 40% → 중위소득 50%로 확대
(4인가구 월167만원 → 월 211만원 수준)
-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,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, 이제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합니다.

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이하,
초·중·고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
(4인가구기준 : 2,111,267원)



신청장소

읍·면·동 주민센터
*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


신청시기

▶ 2015년 6월 1일부터(통합급여)
▶ 교육급여 단독신청은 7월 1일부터
첫 지급일 2015년 9월 25일



지원내용(1년 기준)

초등학생

부교재비 (38,700원)

중학생

부교재비 (38,700원)
학용품비 (52,600원)

고등학생

학용품비 (52,600원)
교과서대 (129,500원)
입학금 및 수업료



상담문의

교육급여 콜센터 **1544-9654**
(7월 1일 개통예정)
보건복지부 콜센터 **129**